

서당학동이 읽은 필사본 ‘용례집(用例集)’의 내용과 특징

전경목*

<차 례>

1. 서론
2. 필사본 용례집의 내용
3. 필사본 용례집의 특징
4. 결론

〈국문초록〉

조선후기에 비양반 출신의 학동들도 서당이나 서재에 출입하며 한문을 익히고 기초적인 유교 경전을 공부했다. 그러나 이들은 유교 경전을 공부해도 과거시험을 통해 정식 관리가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따라서 이들의 수학 목적은 양반의 그것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후에 면임이나 향리가 되었을 때, 업무를 능숙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 지식을 습득하려고 했다. 이때 사용했던 교재가 바로 필사본 ‘용례집’이다. 이러한 책들은 수요자의 신분이나 요구에 따라 다양하게 편찬되었는데 현전하는 용례집을 살펴보면 대개 각종 문서와 간찰 서식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간혹 여가 생활을 위해 소설 등이 첨부된 경우도 있다. 학동들은 이러한 용례집에 실린 각종 문서의 서식과 간찰 및 소설을 서당에서 훈장으로 부터 배우고 익혔다. 이러한 용례집에 수록된 문서와 간찰을 통해 비양반 출신의 학동들이 서당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부를 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으며 여러 문서 그 중에서도 특히 탄원서는 조선후기 사회의 다양한 모습과 갈등 등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당시 사회를 연구하는 데에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주제어 서당, 학동, 향리, 면임, 용례집, 탄원서, 간찰, 소설, 조선후기, 필사본

*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1. 서론

조선후기에 비양반 출신의 학동이 서당이나 서재(書齋) 등에 출입하며 한문을 익히고 기초적인 유교 경전 등을 공부한 사실이 새롭게 규명된 바 있다.¹⁾ 이들은 대부분 아전의 자제와 교생과 같은 지역사회의 중간 계급 출신이었지만 평민과 천민 출신도 가끔 섞여 있었다. 그런데 이들은 비록 서당 등지에서 한문을 익히고 유교 경전을 공부한다해도 현실적으로 과거시험을 통해 관리가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물론 이들 중에는 관리가 되지 못했지만, 생원시와 진사시에 합격하거나 학자로서 이름을 드러낸 자가 적지 않았다.²⁾ 비양반의 신분을 결국 벗어나지 못했지만 문자를 해독하여 자신의 교양을 높이고 품격 있는 생활을 하며 주위 사람들로 부터 존경받다 생을 마친 인물도 상당했다. 그러나 이들이 한자를 익히고 한문을 해독하려고 한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들이 후에 면임이나 향리 및 교생이 되었을 때 관련 업무를 능숙하게 수행하기 위해서였다.

아전이나 중인의 자제들이 서당과 서재 등지에서 수학하는 취지나 목적은 이와 같았기 때문에 실제로 학습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의도가 반영된 과목을 공부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선후기의 유명한 문인 이옥이 경

1) 전경목, 『조선후기의 교생』, 『고문서연구』 33, 2008, 169~205쪽; 전경목 외, 『승충명록으로 보는 조선후기 향촌지식인의 생활사』,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0, 129~171쪽; 전경목, 『조선후기에 서당 학동들이 읽은 탄원서』, 『고문서연구』 48, 2016, 257~286쪽.

2) 대표적인 인물은 김정천(金敬天)이다. 그는 경상도 의성의 향리 출신으로 진사시에 합격한 후 성균관에 수학하며 문과시험을 준비했다. 그러나 결국 문과에 급제해 관리가 되지는 못했지만, 유교 경전을 열심히 공부했으며 『손와만록(巽窩漫錄)』이라는 문집을 남기고 『염승전(廉丞傳)』이라는 한문단편소설을 짓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는 김영진, 『『염승전』 연구』, 『한국한문학연구』 23, 1999, 353~387쪽; 김영진, 『『손와만록자서』를 통해 본 향리 출신 문인 김정천의 생애』, 『대동한문학』 41, 2014, 81~110쪽; 이대형 외 역주, 『손와만록』,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참조.

상도 삼가현으로 유배되었을 때, 아전과 평민의 자제를 가르쳤는데 그는 “먼 시골의 학동들이 배우기를 원하는 것은 소지장의 글이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³⁾ 조선후기에는 소송이 빈번했기 때문에 양반뿐만 아니라 중인이나 평민까지도 이에 대처하기 위해 서당에서 소지장 즉 탄원서나 청원서 등의 작성에 대해 학습하기를 원했던 것이다. 더군다나 아전의 자제들은 이를 미리 학습하면 아전이 된 후 실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연히 이에 더욱 열중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김구의 아버지가 서당을 다니던 김구에게 과거시험 공부보다는 ‘시행문(時行文)’ 배우기에 주력하라고 역설했던 것도 바로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시행문은 소장(訴狀)을 비롯하여 토지매매명문, 제축문(祭祝文), 혼서, 간찰 등과 같이 실제 생활에서 써먹을 수 있는 글을 가리키는데⁴⁾ 평민 출신의 어린 김구가 이런 시행문을 서당에서 잘 익힌 후 ‘이름난 문장’으로 행세하다가 면임이라도 되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그의 아버지는 생각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주장을 했던 것이다.

한편 중인이나 평민 출신의 자제들은 딱딱하고 사변적인 성리서 대신 『전등신화』와 같은 소설을 즐겨 읽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옥의 제자인 지인(知印) 장종득(張宗得)이 이 소설책을 가지고 와서 이옥에게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 점과 이옥이 이 책을 살펴보고 이러한 한문소설을 읽어주는 것이 훈장의 좋은 방법일 중의 하나라고 말하고 있는 사실을 통해 조선후기에 서당에서 소설이 널리 읽혀지고 있었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⁵⁾ 『전등신화』는 여러 편으로 구성된 장편전기소설인데 학동들은 이런

3) 이옥 지음,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옮기고 엮음, 『완역 이옥전집』 2, 휴머니스트, 2009, 149쪽.

4) 김구, 『김구자서전 백범일지』, 나남출판, 2002, 19~20쪽.

5) 『완역 이옥전집』 2, 129~130쪽.

장편뿐만 아니라 단편도 많이 읽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소설이나 시행문을 중인이나 평민 출신의 학동들이 읽었다고 해서 양반의 자제들은 이를 전혀 학습하거나 독서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양반 출신의 학동들도 원할 경우 소설을 읽고 시행문을 학습했으나 그들의 주된 관심은 과거시험 준비나 성리학 위주의 공부였기 때문에 자연히 이와 관련된 과목에 치중했다. 이에 비해 중인이나 평민 출신의 자제들은 한문을 익히고 기초적인 유교 경전을 학습한 후에는 시행문을 학습하거나 다양한 한문소설을 읽었다. 요컨대 중인이나 평민 출신의 학동들이 시행문의 주요 학습자였으며 소설의 또 다른 독자층이었다.

그렇다면 이들이 서당에서 이러한 시행문이나 소설을 어떻게 익히고 교재로 무엇을 사용했을까? 이제까지 밝혀진 바로는 이를 익히기 위한 전문적인 교재는 간행되지 않았다. 다만 토지매매명문과 소장 등은 『유서필지』를 통해서 그리고 간찰은 『한훤차록(寒暄筈錄)』이나 『간찰정요(簡牘精要)』 등을 통해 학습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은 학습 여건이 제대로 갖추어졌을 경우일 것이며 실제로는 이러한 교재보다 부형(父兄)들이 필사해서 전래하던 다양한 필사본 용례집이나 예문집(例文集) 등을 통해 익혔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용례집 혹은 예문집은 『요람(要覽)』 혹은 『수문록(隨聞錄)』 등으로 명명되어 현존하고 있다. 이러한 필사본들은 주로 중인이나 평민의 집안에 전래되어 오다가 일제시기와 근대화 과정에서 대부분 유실되고 극히 일부만 수습되어 현재 도서관이나 박물관 혹은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제 이러한 필사본 용례집들로 어떠한 것들이 있고 그 내용은 무엇이며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2. 필사본 용례집의 내용

이옥이 유배지인 경상도 삼가현에서 쓴 글을 모은 『봉성문여(鳳城文餘)』에는 필영(必英)과 애금(愛琴)의 진술서와 유진문(劉振文)과 정종원(程宗元)의 탄원서 등 4편의 소장이 실려 있다. 필영의 진술서는 그녀가 부모의 동의 없이 젊은 최랑(崔郎)과 혼인을 약속했다가 어미의 노여움을 사서 관비(官婢)가 되자 수령에게 선처를 하소연하기 위해 제출한 글이다. 애금의 진술서는 시댁에서 소박맞아 홀로 어렵게 살다던 그녀가 홀아비와 재혼하려는 순간 이전에 성폭행을 했던 자가 나타나 방해하자 수령에게 이를 막아달라고 청원한 글이다. 유진문과 정종원의 탄원서는 명나라가 망할 때 난을 피해 조선으로 탈출한 중국인의 후예들이 작성한 것으로 수령에게 양식을 구걸하기 위해 쓴 글이다.

그런데 궁금한 점은 서당 훈장이었던 이옥이 이러한 진술서나 탄원서를 어떠한 과정을 통해 구득해 보고 이를 왜 수정해서 자신의 문집에 수록했느냐 하는 점이다. 이옥은 자신에게 글을 배우는 학동 중에 이를 배껴 전하거나 외우는 자가 있어서 그들로부터 이 글을 얻어 보았으며 학동들에게 학습 자료로 보이거나 혹은 무료할 때 이야깃거리를 삼고자 직접 수정했다고 말하고 있다.⁶⁾ 이처럼 당시의 시골 서당 그 중에서도 특히 아전과 평민 등의 자제로 학동이 구성된 곳에서는 소지 읽기가 커다란 유행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훈장이었던 이옥은 학동들이 읽던 진술서나 탄원서를 미리 살펴보고 학습 효과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글을 수정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옥이 살펴본 진술서나 탄원서는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학동들이 구해온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소장의 원본은 아니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6) 위의 책, 137~138쪽, 149쪽.

말하면 그들의 집에 전해 내려오던 필사본 예문집 가운데 실려 있던 것이었다. 이에 대해 이옥이 정종원과 유진문의 탄원서를 소개하면서 그 앞에 붙인 글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동자(童子) 윤신(允新)이 나의 무료함을 위해 하나의 낡은 책[弊卷]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는데, 그 책에는 ‘당인이 양식을 구걸하는 글’ 두 편이 있었다. 내가 여기에 수록하는 것은 그 정황이 가엾기 때문이요, 그 문장 때문이 아니다.⁷⁾

동자 윤신은 이옥의 제자 이윤신을 가리킨다.⁸⁾ 그가 어느 날 선생님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낡은 책을 하나 가져와서 보여주었는데 거기에 수록된 여러 글 가운데 정종원과 유진문의 탄원서가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낡은 책’이다. 낡았다고만 하고 책명을 밝히지 않은 점은 이 책이 사서삼경과 같은 경서나 유명한 학자의 문집은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낡았다는 표현을 통해 오래된 책이며 집안에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것이고 나아가서 아마 그의 부형이 서당을 다닐 시절에 작성하거나 혹은 후일 참고할 일이 있어서 일부로 베껴 놓은 용례집이나 예문집일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책에 수록되어 있던 진술서와 탄원서를 학동들이 읽었던 것이다. 이제 현 전하는 고서 중에서 이러한 용례집이나 예문집을 찾아내어 종류에 따라 분류하고 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위에서 소개한 이옥과 김구의 이야기를 근거로 어떠한 종류의 용례집이나 예문집이 편찬되었을지 생각해 보자. 시골 학동들이 배우기를

7) 위의 책, 66쪽.

8) 위의 책, 158~161쪽.

원하는 것이 소지장이라는 이옥의 주장에 따라 먼저 소지류 위주로 편찬된 용례집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소지류가 아닌 다른 종류의 글이 한 두 편 삽입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또 여기에서 좀 더 확장하여 소지장뿐 아니라 당시에 널리 사용되었던 여러 종류의 문서를 배긴 예문집을 상정해 볼 수도 있다. 한편 간찰은 일상생활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소통 수단이었으므로 소지류와 간찰류가 함께 수록된 용례집도 편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음으로는 평민이나 중인 출신의 학동들이 소설을 즐겨 읽었다는 점에 착안해서 소지장을 비롯한 각종 문서와 소설이 함께 편찬된 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소개한 소지류를 비롯해서 일상생활 도중 작성하던 각종 문서와 간찰 등이 모두 포함된 종합적인 용례집을 가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여 필사본 용례집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 1) 소지류 위주의 용례집
- 2) 각종 문서 위주의 용례집
- 3) 각종 문서와 간찰이 함께 수록된 용례집
- 4) 각종 문서와 소설이 함께 수록된 용례집
- 5) 각종 문서와 여러 글들이 함께 수록된 용례집

이제 위 분류에 따라 용례집을 하나씩 살펴보자.

1) 소지류 위주의 용례집 : 『능착원정소지(能捉冤情所志)』

이 책은 표지도 장정되지 않은 낡은 책이다.⁹⁾ 책의 표지도 없고 책명조

9) 개인소장이며 크기는 미상이다.

차 밝혀져 있지 않아 편의상 첫머리에 나오는 탄원서의 이름을 따서 『능착원정소지』라고 하겠다. 이 책에는 50여 편의 탄원서가 수록되어 있다. 다음의 <표 1>을 보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글의 제목이 ‘○○○○소지’ 혹은 ‘○○장(狀)’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모두 탄원서 혹은 청원서를 나타낸다. 따라서 이 책은 대부분 탄원서나 청원서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물론 (7) <경민편>과 (52) <우음>은 탄원서가 아니다. 『경민편』은 김정국(金正國)이 1519년(중종 14)에 황해도 관찰사로 재임하던 시절, 백성을 교화시키기 위해 편찬한 책으로 부모, 부처(夫妻), 형제자매, 죽친 등 13 조목으로 나누어 인륜의 소중함을 해설하고 이를 범했을 경우 적용되는 법규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¹⁰⁾ 다만 웬일인지 알 수 없으나 이 <경민편>에는 사위(詐僞) 이하의 4조목이 누락되어 있다. (52) <우음>은 까마귀와 백로에 빗대어 세상의 인심을 노래한 글이다. 이 두 편의 글을 빼고는 탄원서나 청원서로 편찬되어 있다.

『능착원정소지』에 수록된 글 중 주목할 만한 것의 목록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능착원정소지』에 수록된 주요 글의 목록

번호	제목	번호	제목
1	能捉冤情所志	23	田訟狀
2	郎州土人原情所志	25	捧債狀
3	薄命妾原情所志	27	防洑狀
4	一身兩役狀	33	(許屠狀)
5	合戶原情所志	51	山訟狀
6	棄婦冤情所志	52	偶吟
7	警民編	53	請油狀

10) 정호훈, 「16·17세기 경민편 간행의 추이와 그 성격」, 『한국사상사학』 26, 2006, 119~158쪽.

글의 내용을 순서에 따라 간략히 소개하면 (1) <농착원정소지>는 수령이 농민에게 어물(魚物)을 잡아 바치는 역(役)을 부과하자 이를 어부에게 재배정해 줄 것을 호소하는 탄원서이다. (2) <낭주사인원정소지>는 서당의 학부모들이 갖은 이유를 대며 훈장의 학채(學債)를 지급하려 하지 않자 훈장이 수령에게 이를 받아 생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소연한 청원서이다. (3) <박명첩원정소지>는 조실부모하여 외가에서 자란 여인이 20세에 시집을 갔으나 신랑이 남녀의 음양 이치를 전혀 알지 못해 오랫동안 독수공방하고 있는 처지를 한탄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다.

다음에 수록된 (4) <일신양역장>은 어려서 장춘(長春)이라 불리던 사람이 성년이 된 후 장동(長東)으로 개명했으나 군역을 부과하던 담당자가 이를 형제로 오인해서 두 가지 역을 부과했으니 이를 시정해달라고 요청하는 탄원서다. (5) <합호원정소지>는 홀아비와 홀어미가 서로 뜻이 맞아 합치려 했으나 담당자가 합호하는 것을 가로 막자 이를 시정해달라고 부탁하는 청원서이다. (6) <기부원정소지>는 혼인 후 9년이 넘도록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쫓겨난 여인이 다른 남자와 재혼해서 아이를 낳고 잘 살게 되자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찾아와 괴롭히는 전남편을 저지해달라고 제출한 것이다.

이상에서 소개한 6편 탄원서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학동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구두가 달려 있고 또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재미있게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탄원서들의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3) <박명첩원정소지>의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아웁니다. 세상의 억울한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옛날에 운명이 기구한 아내는 혹 미모가 쇠하여 소박 당하고 좋아하던 정이 사라져 소박맞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소박 당한 것은 얼굴빛이 쇠해서 그런 것도 아니요 사랑하던 정이 성글어져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저는 갓 태어나던 해에 부모를 모두 잃고 외가에서 자랐습니다. 20세의 꽃다운 나이에 금성인(錦城人)에게 출가했는데 신랑의 나이는 25세였습니다. 남자의 나이 25세라면 그 누군들 남녀 화락(和樂)하려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서로 만난 첫날밤부터 지금까지 6~7년 동안 한 번도 이부자리 속의 즐거움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청춘의 마음에 사랑하고픈 정을 이기지 못해, 매번 밤이 깊어지면 치마를 풀고 잠자리로 들어가 손으로 남편의 전신을 애무하며 합환(合歡)할 것을 강청해도 신랑은 듣고도 모른 척해서 긴긴밤을 헛되이 보냅니다. 아침이 밝기를 고대하여 좋은 얼굴빛을 하고서 말과 웃음으로 교태를 부려 욕정을 도발해도 신랑은 보고도 못본 척 합니다.

그러다보니 밤마다 잠자리는 찬 샘물이 흐르듯 냉랭하고 방안 분위기는 서로 적국(敵國) 대하듯 합니다. 부부 사이가 원수와 같아서 저는 즐거운 금슬을 맛보지 못했으며 또 부부의 흥취를 알지 못합니다. 새로운 옷을 몸에 걸쳐도 신랑이 관심 없으니 스스로 느슨해지고 어여쁜 머리 장식을 해도 헛될 뿐입니다.

그래서 통곡하고 친정으로 돌아와 자결하려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모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당돌하게 소장을 제출해서 추심(推尋)하려 합니다. 신랑은 외모를 보면 얼굴과 피부 및 모발 등은 사람과 흡사하나 방중(房中)의 일은 승려의 빛과 같아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 가련한 제 인생은 살아도 죽은 것만 못합니다. …… 지아비가 부르면 지어미는 따라야 하는 것이 부부의 의리요 지어미는 지아비를 따르는 것이 남녀의 정입니다. 그러나 만일 사랑하는 정이 있는 여자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지아비를 따르게 한다면 반드시 즐겨 따르지 않음은 천성이 그러합니다. ……

남녀의 구구한 사정(私情)을 적선(積善)하는 수령의 아래에 우러러 하소연하오니 젊은 여인으로 하여금 쓸모없는 남편의 집 아래에서 헛되이 늙지 않도록 해주셔서 이치의 마땅함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천만번 바라

읍니다.¹¹⁾

조실부모하고 외가에서 자란 양녀(良女)가 20세가 되어 혼인했는데 25세의 신랑은 음양의 이치를 몰라 혼인한 후 6~7년이 되도록 한 번도 금리지락(衾裡之樂)을 느껴보지 못했다. 그래서 신부는 온갖 노력을 기울였으나 신랑은 이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조차 없었다. 통곡하고 친정으로 돌아와 자결하려 했으나 고모가 이를 보고 소장을 올려 재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신랑을 외모로만 살펴보면 사람의 모습을 갖추었으나 방사(房事)에는 아무 쓸모가 없었다. 그래서 젊은 신부는 무기력한 남편의 집에서 헛되이 늙느니보다 재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박명첩원정소지>를 비롯해서 위에서 소개한 글은 처음 판에 제출되었을 때에 비해 후에 전사(轉寫)되는 과정에서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이욕이 애금과 필영의 진술서를 수정했던 것처럼 문학적으로 손질하거나 혹은 특정 사실을 과장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니면 독자의 호기

11) 白等 天地之間冤痛事段 古有薄命妾 或色衰而見薄者 或情踈而見薄者有之 而矣女之見薄 非色衰而然也 非情踈而然也 大槩矣女襁褓之季 俱失父母 見養於外家 芳年二十出嫁於錦城人 則郎年二十五歲也 男兒二十五歲 孰無陰陽之心 自相逢夜 今至六七之間 不見一番衾裡之樂 以青春之心 不勝其情 每於深夜解裙就枕 手撫全身 强要合歡 則聽而不聞 虛送長夜 苦待明朝 做其好容 巧其言笑 以挑其心 則視而不見爲臥乎所 今宵明宵 枕席流泉 房帷之中 便成楚越 夫婦之間 有若仇敵 琴瑟之樂 吾未見之也 關雎(雎의 誤:인용자주)之興 吾未知之也 身上新衣 自然而緩 頭邊鬢鬢 猶是虛文乙仍于 痛哭歸來 方欲自決是如乎所 姑母唐突呈狀 推尋設計爲乎所 所謂郎子 以外貌又 見之 則面目肌髮太 似人矣 而至於房事ㄷ 有同僧流(梳의 誤:인용자주) 可憐此生 生不如死是乎矣 …… 夫唱婦隨 夫婦之義也 女必從夫 男女之情也 而使有情之物 隨無益之夫 必不肯從 天性之固然 …… 男女區區私情 仰訴於積善之下 無使青春之女人 虛老於無用將軍之家 下遂物理宜 千萬望良爲只爲(『능착원정소지』, 13~17쪽.) 이 탄원서는 2014년 6월에 안승준 선생님이 한국고문서학회 월례발표회에서 소개한 바 있다. 이 용례집을 소개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심을 자극하는 극히 사적이고 비밀스러운 내용을 매우 상세히 서술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아예 처음부터 소장 형식을 빌려 작성된 문학작품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비해 다음의 (23) <전송장> 이하의 글들은 실제로 일어났던 사실들만 적시해 놓은 점으로 미루어 조선시대에 작성해 관에 제출했던 탄원서를 베껴놓은 것으로 추정된다. <전송장>을 직접 살펴보자.

아무 촌에 사는 ○○○(이름)

삼가 다음과 같이 아뢰입니다. 엇드려 살펴보건대 매매의 법은 반드시 시기의 선후로 판단하며 시기는 반드시 문권으로 증험합니다. 제가 지난해에 원수원(元水員)에 있는 논 3마지기를 인근에 사는 이춘손(李春孫)으로부터 사들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랫동네에 사는 박원충(朴元忠)이 병진년에 춘손에게 빌려준 돈 30냥과 그에 대한 이자로 이 논을 대신 차지[代執]했다며 억지로 빼앗으려 했습니다. 세상에 어찌 이와 같이 근거 없는 인심이 있다는 말입니까? 만일 그가 대신 차지하고 있었다면 어찌 이와 관련된 문권(文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춘손이 지금도 살아있는데 그의 말 가운데 대신 차지하도록 했다는 말이 한 마디도 없단 말입니까? 진실로 이러한 불충한 행패를 견줄 곳이 없으나 사력(私力)으로 막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연을 갖추어 우러러 호소하오니 밝게 살피신 후 엄히 징벌하는 처분을 내려주시고 공증문서에 관인을 찍어 발급해 주셔서 다시는 폐단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실 일입니다. 명령해 주십시오.¹²⁾

12) 某村姓名』右謹陳 伏以賣買之法 必以先後斷之 先後之期 必以文卷驗之是白乎所 矣身去年分 元水員番三斗落 買得於隣居李春孫處矣 下洞居朴元忠 稱以丙辰年分 以春孫處捧債三十兩積年但(俱의 誤:인용자주)利代執是如 生臆欲奪 世豈有如許無據之人心乎 大抵渠若代執 則何無文券是乎脉 且春孫尙存而言內 元無代執云云是乎那 固不忠行悖無比 私力莫可仰(抑의 誤:인용자주)制故 緣由仰訴 洞燭敎是後 處分懲戢是遣 且立旨踏印成給 更無後弊之地 行下爲只爲 行下(‘向’자 누락:인용자주)敎是事(위의 책, 47~48쪽.)

이 탄원서는 논(田)의 소유권을 놓고 다투면서 관(官)에 제출한 것이다. 아무개 촌에 살던 원고가 원수원에 있는 논 3마지기를 인근에 사는 이춘손으로부터 사들였는데 아랫마을에 사는 박원충이 이춘손에게 받을 빚 30냥과 그에 대한 이자로 이 논을 대신 차지했다고 주장하며 억지로 빼앗으려 했다. 원고는 이춘손이 아직 살아있는데 빚 대신 논을 잡힌 적이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수령에게 이 논이 자신의 소유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해 주고 박원충을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처럼 실제로 관에 제출하는 소장에서는 인명과 지명 및 소송 대상물의 크기와 가격 등을 구체적으로 밝혔으며 그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전개되었던 사실만을 기록해서 제출했다.

위의 <표 1>에 소개된 나머지 탄원서들은 대략 이처럼 실제 있었던 사실만 기록해서 제출했는데 그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25) <봉채장>은 돈을 빌려준 후 갚지 못해서 대신 3칸의 초가를 전당하고 있었으나 채무자가 이를 몰래 다른 사람에게 팔자 돈을 받아주든지 혹은 집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탄원서이다. (27) <방보장>은 농사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마을 사람들이 보(洑)를 수리하려고 하지 않자 수령에게 이를 지시해 달라고 요청하는 청원서이다. 권농(勸農)의 책임이 수령에게 부과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33) <허도장>은 겨울에 환곡 신고 가던 소가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다리가 부러지자 이를 잡을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소지이다. (51) <산송장>은 형리들이 도형(圖形)을 작성할 때 사정(私情)에 얽매어 사실대로 그리지 않음을 고발하는 내용의 탄원서이다. (52) <우음>은 위에서 이미 소개한 바 있으며 (53) <청유장>은 집이 가난하지만 독서를 하고 싶으니 호롱불을 켤 수 있도록 기름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는 청원서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능착원정소지』는 소지장 위주로 작성된

용례집이다. 그런데 여기에 수록된 탄원서나 청원서의 내용이 조선후기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때문에 당시의 다양한 사회상을 파악할 수 있어서 매우 유익한 연구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2) 각종 문서 위주의 용례집 : 『요람』 1

소지류 등을 비롯해 조선후기에 널리 사용되었던 각종 문서의 용례를 편찬한 책으로는 『요람』 1이 있다.¹³⁾ 서당에서 읽었던 여러 용례집의 이름이 『요람』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편의상 숫자를 붙여 구분하겠다. 『요람』 1에는 수기·수표(手記·手標)와 단자(單子) 및 통문식(通文式) 등 조선후기에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던 41종 80여 점의 문서의 서식(書式)이나 사례가 다양하게 소개되어 있다. 그 중 주목할 만한 문서의 목록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2>과 같다.

<표 2> 『요람』 1에 수록된 주요 글 목록

번호	제목	번호	제목
1	(手記·手標)	9	面任書目式
2	請贖單子	11	風憲書目·報狀式
3	通文式	12	農形報狀·書目
4	所志文字	17	殺獄報狀·書目式
8	面任報狀式	21	完文

이 책에 수록된 주요 문서의 내용을 살펴보자. 조선후기에는 약속이나

13) 이 책은 전라북도 남원군 송동면 세전리에 세거(世居)하던 김해김씨 종가에 소장되어 있다. 1985년에 필자가 문화재지표조사 도중 발견해서 복사한 것이다. 1책 33장이며 크기는 23.5×21cm이다. 편찬자 미상이고 필사 시기는 정사년(丁巳年) 11월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다짐 또는 서약 등을 할 때 수기나 수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1) <수기·수표>는 돈을 빌리면서 이자와 상환 기간 등을 명시하고 기한 내에 반드시 갚겠다고 약속하거나 긴급한 사정으로 돈을 전당잡히고, 타인 점유(占有)의 산에 사망한 부모의 시신을 투장(偷葬)한 후 발각되자 빠른 시일 내에 이장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작성한 각서 등으로, 8점이 소개되어 있다. (2) <청부단자>는 자기 마을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나자 이웃 마을에 재정적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가 두 점 예시되어 있다. (3) <통문식>은 자기 마을에서 일어난 폐단을 해결할 목적으로 이웃 마을의 원로들을 초청하기 위해 보낸 통고문의 일종으로 네 가지 예문이 제시되어 있다. (4) <소지문자>는 탄원서에 자주 보이는 이두(吏讀)를 찾아보기 쉽게 1자에서 5자로 분류하여 소개하고 있다. 또 탄원서 작성시 상투적으로 사용하는 문구가 다양하게 예시되어 있으며 탄원서 끝에 쓰는 결사(結辭)도 제시되어 있어 실제 탄원서를 작성할 때 크게 참고가 된다.

『요람』 1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면임과 풍헌 등이 작성하는 보장(報狀)과 서목(書目)이 다양하게 예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면임과 풍헌은 지방 행정 조직의 말단에 속하는 면이나 동의 책임자로, 평민이 오를 수 있는 매우 명예로운 자리였다. (8) <면임보장식>은 면임이 수령의 지시를 수행하고서 그 결과를 기록해 올린 보고서이며 (9) <면임서목식>은 앞의 보장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한 것이다.¹⁴⁾ (11) <풍헌서목·보장식>은 면임의 그것과 같으나 풍헌이 작성하는 것이다. 이들은 농사철을 당하면 농사가 적정한 때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등 농형(農形)에 관련된 일들을 수령에게 때에 맞추어 상세히 보고해야 했다. 이 때 사용하는 문서식이 바로 (12) <농형보장·서목>이다. 그 중 보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4)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160쪽.

하지(夏至)가 멀지 않으나 이르는 곳마다 가뭄으로 이양판(移秧板)이 모두 거북등처럼 크게 갈라져 있습니다. 이양할 때 내려야 하는 비가 오래도록 안 내려 농민들이 무지개를 보고자 바라는 마음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 커졌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어제 이양할 때 내려야 하는 비가 갑자기 내려 저지대의 습한 곳은 모두 이양을 했으나 고지대의 건조한 곳은 이양 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보고하는 일로 첩정으로 올립니다.¹⁵⁾

하지가 되도록 비가 내리지 않아 땅이 모두 갈라져 농민들이 비를 애타게 기다렸는데 다행히 어제 비가 내려 저지대에 있던 논은 이양 했지만 고지대의 논에는 모내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면임이 수령에게 보고하고 있다.

면임이나 풍헌의 역할은 이에 그치지 않고 해당 면이나 마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간여하고 보고해야 했다. 예컨대 (17) <살육보장·서목식>을 살펴보면 살인사건이 관내에서 일어났을 경우, 그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다. 면임은 살인사건에 대한 소식을 듣는 즉시 면임은 증인과 관련자의 이웃을 체포한 후 이러한 사실을 신속하게 수령에게 보고하고 있다.

면임과 풍헌은 이 이외에도 자기 관할 하의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그들이 공동으로 결의한 사항이 시행되도록 하는 데에도 커다란 역할을 해야 했다. (21)의 <완문>을 살펴보면 이를 알 수 있다. 조선후기에 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온돌이 널리 보급되면서 땀감 부족 현상이 매우 심해지자 거주지 인근의 산들이 모두 민둥산이 되어 철마다 사태(沙汰)가 자주 일어났다. 그래서 거주지에서 가까운 인근의 산지에서는 땀감을 채취하지

15) 云〃 夏至不遠 到處秧坂 皆爲龜坼是乎矣 秧雨太晚 農民之靚望去益矣 何幸昨日良中 秧雨忽降 低坪之有濕氣處 皆爲秧插是乎乃 高坪之乾燥處 則未由移插 乙仍于 緣由論報爲臥乎事 合下(行의 誤:인용자주)牒呈 伏請(『요람』 1, 17쪽.)

못하도록 금하는 법규들이 마련되었는데 이 마을의 경우도 구성원들이 대동단결해서 금양(禁養)하는 한편 이를 어길 경우 마을에 벌금으로 1냥씩 내기로 결의했다.

이상에서 살펴 본 것처럼 『요람』 1은 소지류를 비롯하여 조선후기에 민간에서 널리 쓰인 각종 문서의 용례가 편찬되어 있는 책이다. 단순히 소지류 문서의 용례를 보여주는 데에 만족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던 각종 문서의 용례뿐만 아니라 면임이나 풍헌이 되었을 경우에 대비해서 이때 작성하는 각종 공문서의 용례까지 수록된 책으로 이러한 용례집은 조선후기에 민간에서 널리 활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3) 각종 문서와 간찰이 함께 수록된 교재 : 『요람』 2

조선시대에는 간찰이 소통의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었는데 수발신자가 누구냐에 따라 갖추어야 할 격식이 크게 달랐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작성해야 했다. 특히 청탁하는 내용의 간찰은 어떠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느냐에 따라 허락의 여부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 따라서 이를 학습하는데 많은 노력과 시간을 쏟아야 했다. 『요람』 2에는 대략 45편의 각종 문서와 99편의 간찰이 수록되어 있다.¹⁶⁾ 45편의 각종 문서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작성하는 탄원서, 명문, 통문들과 면과 마을의 집강과 두목 등이 제출하는 첩정과 서목 등인데 그 중 주목할 만한 문서나 간찰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16) 개인 소장으로 1책 44장이고 크기는 25×19.5cm이다. 앞 표지에는 '세재을사(歲在乙巳)'라 되어 있고 뒤의 속표지에 '세재계묘덕성신등(歲在癸卯德性新騰)'이라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1903년에 필사하고 1905년에 가의(加衣)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 3〉 『요람』 2에 수록된 주요 글 목록

번호	제목	번호	제목
2	數東徒十罪文	46	請書冊簡, 答簡
3	本道康津縣儒生某等謹齊沐百拜泣血上書于巡相國閣下	47	請魚物簡, 答簡
4	本縣儒生某等謹齊沐拜手稽首上書于勅使閣下	48	請祭需簡, 答簡
5	康津縣儒生某等謹齊沐上書于巡相國閣下	49	請同行適市簡, 答簡
6	境內多士某等謹齊沐上書于城主明政之下	50	請六足簡, 答簡
7	化民曹秉華敢陳原情于城主仁政之下	51	請債簡, 答簡
8	本縣儒生某等謹齊沐百拜上書于巡相國觀察之下	54	請材木簡, 答簡
9	上總理衙門書	56	請燈油簡, 答簡
10	本面某里居罪民某	60	請食鼎簡

위 <표 3>의 (2) <수동도십죄문>부터 (10) <본면모리거죄민모>까지는 동학농민전쟁이 일어난 이후 강진현의 유생들이 동학농민군의 만행을 고발하거나 동학농민전쟁 과정에서 위정척사에 공을 세운 인물을 현창하기 위해 관에 제출한 탄원서이다. 그 중 (5) <강진현유생모등근제목상서우순상국합하>는 강진현의 유생들이 같은 고을 향약도통장 김한섭을 포상해 달라고 전라감사에게 요청한 탄원서이다. 그는 동학농민군이 강진읍성을 공격할 때 분연히 거병해 남문을 지키다가 죽임을 당했다. 나머지 탄원서들도 모두 강진현의 유림들이 동학농민전쟁과 관련해서 작성한 것이다.

『요람』 2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각종 청탁을 위해 작성하는 간찰에 대해 매우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46) <청서책간>부터 (60) <청식정간>을 보면, 서책을 빌리기 위해 보내는 간찰에서부터 어물과 제수, 말과 노비, 목재와 등유, 식정과 목화 등을 얻어내기 위해 작성한 편지들이다. 청탁해야 할 경우, 매우 간절하게 부탁하는 방법을 그리고 거절하는 답장을 해야 경우, 상대방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거절하는 요

령 등을 소개해 조선말기의 일상생활을 매우 자세히 엿볼 수 있다. 예컨대 (49) <청동행적시간> 즉 시장에 함께 가자고 요청하는 편지와 그에 대한 답장을 살펴보자.

제가 오늘 시장 주변에 일이 있어서 장차 길을 떠나려 하는데 같이 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전인(專人)을 보내어 편지를 올리니 혹시 형께서 시장에 가서야할 일이 있다면 저와 함께 가는 것이 어떨지요? 간절히 바랍니다. 나머지는 바빠서 줄입니다. 예를 제대로 갖추지 못합니다.¹⁷⁾

시장에 가야 하나 함께 갈 사람이 없어서 전인을 통해 아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 의향을 묻고 있다. 수신자는 사정이 허락한다면 함께 시장에 갈 수 있을 것이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거절하는 답장을 썼을 것인데 각각의 답장 요령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먼저 함께 시장에 가는 경우이다.

보내주신 편지를 삼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마침 시장에 갈 일이 있으나 특별히 함께 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은혜로운 편지가 마침 도착하니 다 펴보기도 전에 먼저 기쁜 마음이 일었습니다. 하루 동행하는 것도 인연이라는 것이 이를 말하는 듯 합니다. 조반을 마친 후 즉시 갈 계획이니 조금만 기다려 주심이 어찌합니까? 나머지는 바빠서 줄입니다. 답장하는 예를 갖추지 못합니다.¹⁸⁾

17) 弟今日有事於市邊 將欲發程 無可與同進之人 故如是專書 兄亦或有適市之事 則同進如何 切企耳 餘走草 不備禮(위의 책, 51쪽.)

18) 示意謹悉 而弟亦來有適市之事 別無可與同行之人矣 惠書適到 開緘未半 喜眉先聳 此所謂一日同行 亦是緣者也 朝飯後 卽晉爲計 少俟之如何 餘忙 不備謝禮 (위의 책, 51쪽.)

자신도 시장에 가야하는 일이 있으나 함께 갈만한 사람이 없어 고민하던 중이었었는데 마침 동행 여부를 묻는 편지가 이르자 미처 다 뜯어보기도 전에 반가운 마음이 솟구쳤다고 말하고 있다. 이어 하루 동행도 인연이라며 조반을 먹은 후 즉시 갈 계획이니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했다.

거절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답장을 써 보냈다.

말씀하신 뜻이 비록 은근합니다만 저는 오늘 시장 주변에서 볼 긴요한 일이 없으며 또 가사에 구애되는 바가 있어 몸을 빼낼 길이 없습니다. 은근한 마음에 부응하지 못하고 도리어 결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생략합니다. 답장의 예의를 갖추지 못합니다.¹⁹⁾

자신은 시장에 갈 일이 없는데다 집안 사정 때문에 시간 내기가 어려워 뜻에 부응하지 못하니 노여워하지 마시라고 당부하고 있다. 이처럼 청탁할 때뿐만 아니라 그것을 들어주거나 혹은 거절할 때의 간찰까지 예시하고 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갖가지 청탁을 해야만 했는데 이러한 경우, 『요람』 2와 같은 용례집에는 그에 맞는 여러 형태의 간찰이 예시되어 있어서 이를 학습하려는 학동에게 커다란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각종 문서와 소설이 함께 수록된 용례집 : 『요람』 3, 『요람』 4

각종 문서와 소설이 포함된 용례집으로는 『요람』 3과 『요람』 4가 있는데 먼저 『요람』 3을 살펴보자.

19) 示意雖爲勤然 而弟於今日 別無所繫於市邊 又有所拘於家事 而抽身無路 未副勤教 還爲缺然 其或恕諒否 餘略草 不備謝禮(위의 책, 51쪽.)

(1) 『요람』 3

『요람』 3은 『속명유취(俗名類聚)』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는데²⁰⁾ 여기에 수록된 글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4>과 같다.²¹⁾

<표 4> 『요람』 3에 수록된 주요 글 목록

번호	제 목
1	孔子黃鐸答書
2	俗名類聚
3	初虐方文
4	神筆占
5	龍山山訟所志類

(1) <공자황탁답서>는 전래 과정에서 앞부분이 떨어져 나가 글의 정확한 제목을 알 수 없지만 <공자동자문답(孔子童子問答)>으로 추정된다.²²⁾ 공자가 길을 가다 황탁(일명 項託)이라는 동자를 만나 서로 문답을 통해 언어유희를 벌이는 내용이다. ‘평천하(平天下)’를 두고 둘이 논쟁하는 대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공자 : 내가 장차 평천하를 하려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동자 : 산은 높고 물은 깊으며 사람 또한 귀천(貴賤)이 있는데 어떻게 평천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산이 평평해지면 짐승이 의지할 곳이

20) 전경목, 『『속명유취』 해제』, 『문헌과해석』 34, 2006. 169~196쪽.

21) 개인소장으로 1책41장이며 크기는 21.8×19.5cm이다. 표지의 오른 쪽 하단에 ‘癸未正月寫’라 기록되어 있어서 계미년에 필사된 것임을 알 수 있다.

22) 윤주필, 『한국에서의 <공자동자 문답> 전승의 분포와 그 특징』, 『열상고전연구』 23, 열상고전연구회, 2006, 239~276쪽.; 『<공자동자 문답>의 동아시아적 전개 비교론』, 『고소설연구』 38, 2014, 357~396쪽.; 『동아시아 <공자동자 문답> 전승의 연원 고찰』, 『대동문화연구』 89, 2015, 473~503쪽.

없고 물을 매우면 고기가 살 수 없으며 소인이 없으면 군자가 보호할 것이 없습니다.²³⁾

천하를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공자의 질문에 동자는 천하를 고르게 하는 것은 인력으로는 할 수도 없는 일이며 해서도 안 될 일이라는 의미로 되받아치고 있다. 문자유희를 통해 유가의 인위적 다스림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도가적인 무위의 다스림을 펼쳐야 한다는 뜻을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다.

(2) <속명유취>는 1,400여 개의 속명이 인륜, 인사, 인품 등 13개 항목으로 나뉘어 풀이되어 있다. 가령 ‘복성(卜姓)’은 ‘득첩(得妾)’, ‘안항(鴈行)’은 ‘형제(兄弟)’,²⁴⁾ ‘조이[召史]’는 ‘송제집’, ‘자사(子舍)’는 ‘책방(冊房)’²⁵⁾으로 풀이 되어 있다. 또 ‘거화(居火)’, ‘거토(居土)’, ‘거수(居水)’는 관리의 포폄에서 상·중·하를 의미했으며²⁶⁾ ‘태지(胎紙)’ 혹은 ‘태록(胎錄)’은 ‘편지중사통(片紙中私通)’이라고 풀이하고 있다.²⁷⁾ 이는 일종의 사전으로 일상생활을 하거나 탄원서 등을 작성할 때 매우 유용하게 활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초학방문>과 (4) <신필점>은 질병이나 해충을 퇴치하기 위한 주문과 신탁점 방문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5) <용산산송소지류>는 산송문서를 등서해 놓은 것이다. 전주이씨 이교의(李教儀)의 선산이 전라도 무장현 동음치면 용산리에 있었는데 읍리(邑吏)인 김다여(金多汝, 일명

23) 孔子曰 吾將欲平天下 何以爲之乎 童曰 山高水深 人亦有貴賤 何以平天下乎 山平則獸無以依 水壅則魚無以生 無小人則君子不得保矣(『요람』 3, 1쪽.)

24) 위의 책, 5쪽.

25) 위의 책, 13쪽.

26) 위의 책, 23쪽.

27) 위의 책, 24쪽.

金寬鉉)가 전주이씨 몰래 투장했다. 그래서 산송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용산산송소지류는 이 과정에서 실제로 관에 제출했던 소지와 향좌수(鄉座首)가 작성했던 보고서 및 도형(圖形), 김관현의 다짐 등을 등서해 놓은 것이다.

이 『요람』 3은 전승 서사물이라 할 수 있는 <공자향탁문답서>와 <용산산송소지류>가 수록되었다는 점에서 각종 문서와 소설이 함께 수록된 용례집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일종의 사전인 <속명유취>도 실려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고 할 수 있다.

(2) 『요람』 4

『요람』 4는 16편의 글로 이루어졌는데²⁸⁾ 크게 소설류, 역사기록류 및 소지류 등 세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²⁹⁾ 주요 글 목록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5>와 같다.

〈표 5〉 『요람』 4에 수록된 주요 글 목록

번호	제목	번호	제목
1	崔致遠傳	8	栗木里接龜山所志
2	朴泰輔直諫錄(朴應教直諫錄)	9	鼠大盜供辭
3	南漢日記	10	捕盜監考猫同年一萬
4	婢猫今所志	11	農牛等狀
5	奴狗同原情	12	任自剛山訟上言
6	枝頭鵲諫治等狀	14	解(李)順弼順貞兄弟之訟
7	加魔怪年一百六十五	16	李生傳

28)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이며 1책 39장으로 크기는 30.6×18.7cm이다. 이대형 등에 의해 번역되었다. (이대형, 이미라, 박상석, 유춘동역, 『요람』, 보고서, 2012.)

29) 이대형은 『요람』 해제에서 소설과 서, 역사기록물, 소지류, 상언과 제사로 구분했다. (위의 책, 7~12쪽.)

소설류로는 (1) <최치원전>과 (16) <이생전>을 들 수 있다. (1) <최치원전>은 신라 말 최고의 문장가인 최치원의 일대기를 그린 것이나 금돼지와 관련된 탄생이나 천녀가 하늘에서 내려와 젖을 먹여 기르는 성장과정 및 중국으로 가던 중 용궁에 들러 겪는 일 등이 매우 환상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16) <이생전>은 재상 이경원(李景遠)이 아들을 낳지 못해 절에 시주하고 얻은 아들 이화실의 일대기를 그린 소설이다. 이화실은 무사히 장성해 절세미인인 김진사의 딸 봉옥(鳳玉)과 혼인하기로 약속했다. 그런데 실행 과정에서 봉옥이 시비 막례(侍婢 莫禮)와 함께 사라지자 신부측에서 이화실을 관에 고발했으며 왕은 이생에게 1년 이내에 이들을 찾아내도록 명령한다. 이후 이생은 어느 노인을 만나 이들이 대려국(帶礪國)의 구중궁궐에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들을 찾아 나선다. 온갖 고생 끝에 이들을 찾았으나 봉옥은 여왕(礪王)의 아내가 되어 돌아오기를 거절했다. 이생은 여왕과 봉옥을 처단하고 막례와 함께 돌아오자 왕이 그를 대려국 왕으로 봉해 부모를 모시고 대려국으로 가서 만세를 누렸다.

역사기록류로는 (2) <박태보직간록>과 (3) <남한일기>가 있다. (2) <박태보직간록>은 숙종이 박태보를 직접 국문한 과정을 기록한 글이다. 박태보가 인현왕후 폐위를 반대하는 상소를 올리자 이에 화가 난 숙종은 온갖 고문을 다하며 그를 굴복시키려 했다. 그러나 박태보는 끝내 직간하다 귀양길에 오른 직후 사망하게 되는데 그 과정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 (3) <남한일기>는 병자호란이 일어나던 1636년 12월 12일부터 이듬해 1월 2일까지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피난하던 과정을 기록한 글이다.

소지류로는 이 책에 실려 있는 16편의 글 중 10편이 이에 해당한다. (4) <비묘금소지>과 (5) <노구동원정>은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와 개가 주인에게 서로 충성을 하소연 하는 내용이다. (6) <지두작간치등장>과 (7)

<가마괴년일백륙십오>는 까치와 가마귀가 서로 사람에게 이로운을 준다며 다투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8) <율목리점오산소지>와 (9) <서대도공사>는 다람쥐와 쥐가 곡식을 놓고 서로 다투는 내용을 탄원서와 자술서로 작성한 것이며 (10) <포도감고묘동년일만>은 도적 체포 책임자인 고양이의 진술서이다. (11) <농우등장>은 평생 사람을 위해 고된 일을 해야만 하는 소가 마침내 자신의 몸까지도 사람의 먹이로 내놓아야 하는 억울함을 호소한 탄원서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소지류는 모두 동물을 등장시켜 인간의 비리와 탐욕을 고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탄원서 형식을 활용한 소설이라 할 수 있다.

(12) <임자강산송상언>은 권력을 이용해서 사망한 모친을 임씨의 선산에 능장한 최주화(崔柱華)를 처벌하고 이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산송소지이다. (14) <해이순필순정형제지송>은 이순필과 이순정 형제가 토지를 가지고 다투자 당시 재판관이던 강원감사 정철(鄭澈)이 서로 화해하도록 하고서 기록한 글이다. 정철의 문집인 『송강집』에 수록되어 있던 것을 베꼈다. (15) <경문부기전망상언>은 임진왜란 당시 의병활동을 하다 전사한 경개(慶豈)의 아들 경문(慶文)이 그의 부친의 충직한 행적을 관에 알려 정려와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청원서이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사실에 기인한 것으로 앞에서 살펴본 의인화된 탄원서와는 그 성격이 달랐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요람』 4는 전기소설과 역사기록류 및 탄원서 등으로 이루어진 용례집으로 서당에서 학동들이 이를 활용해 시행문 작성 방법 등을 배우는 한편 이를 낭독하거나 묵독하며 여가 생활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5) 각종 문서와 여러 글들이 함께 수록된 용례집 : 『상사동기(想思洞記)』, 『보감(寶鑑)』, 『수문록(隨聞錄)』, 『전주영리심처장(全州營吏尋妻狀)』

이제 마지막으로 각종 문서와 여러 가지 글들이 함께 수록된 용례집을 살펴보자.

(1) 『상사동기』

『상사동기』는 아래의 <표 6>을 보면 알 수 있는 바와 10편의 글로 이루어져 있다.³⁰⁾

<표 6> 『상사동기』에 수록된 글의 목차

번호	제목	번호	제목
1	相思洞記	6	禮狀式
2	大丘訓長原情	7	笏記
3	竹枝詞	8	帛狀式
4	歸去來辭	9	各祭祝辭(所志)
5	襄陽歌	10	上書

위 표를 보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소설과 시 등의 문학작품이 4편, 간찰식과 흘기가 3편, 탄원서 등 소지류가 3편 실려 있다. 목차에는 (10) ‘각제축사’로 되어 있으나 실지로는 제목과 달리 탄원서가 실려 있으며 끝에는 목차에 나오지 않는 상서가 한 편 수록되어 있다. 여러 종류의 글이 함께 수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소설과 시 등 문학작품을 살펴보면 (1) <상사동기>는 한문소설

30)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으로 1책 22장이며 크기는 32.4×21.4cm이다. 편찬자와 편찬시기는 미상이다. 원래 표지가 없었으나 후에 加衣하며 책 첫머리에 나오는 소설 제목으로 책명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로 '영영전(英英傳)'이라는 이름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홍치년간에 성균진사 김생(金生)이 어느 날 거리에서 회산군택(檜山君宅)의 시녀인 영영을 보고 사랑에 빠져 온갖 우여곡절 끝에 하룻밤 운우지락을 이루고 이별한다. 그 후 문과에 장원급제한 김생이 회산군택 앞을 지나다 들러 영영과 남몰래 편지를 주고받으나 사랑을 이룰 길이 없어 상사병에 걸리는데 이러한 사실을 안 그의 친구 이정자(李正字)의 도움으로 두 사람은 마침내 사랑을 이루게 된다는 내용이다. (3) <죽지사>의 원제는 '대이태백 혼송전죽지사(代李太白魂誦傳竹枝詞)'다. <죽지사>는 원래 민가에 전해지는 것이었는데 후기에 많은 문인들이 자기의 시대와 지역에 맞게 응용하여 창작했다고 한다. (4) <귀거래사>는 도연명이 지은 시이고 (5) <양양가>는 이백의 시이다.

간찰과 হল기는 혼인할 때 보내는 (6) <예장식>과 상사에 보내는 (8)의 <조장식> 및 혼례 절차를 기록한 (7) <홀기>이다. 소지류는 3편으로 (2) <대구훈장원정>은 학동들로부터 학채를 받지 못한 대구의 훈장이 이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탄원서로 『능착원정소지』에서 소개한 <낭주사인원정소지>의 이본이다. (9) 소지는 흥년이 들어 진대를 요청하는 청원서이고 (10) <상서>는 경상도 영해(寧海) 출신 유학 김시원(金始元)이 동생 시경(始慶)과 함께 서울에서 과거시험을 보고 돌아오다 영춘현(永春縣)의 창촌(倉村)이라는 곳에 머물렀는데 마침 동생이 병이 나자 구호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

이처럼 『상사동기』에는 시, 소설, 각종 문서 서식과 탄원서 등이 다양한 글들이 수록되어 있다.

(2) 『보감』

『보감』에는 40여 편의 각종 문서와 서너 편의 간찰이 뒤섞여 있다.³¹⁾

다음의 <표 7>을 보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통문, 다짐[俵音], 정문(呈文), 상언, 원정, 소지, 간찰, 소(疏), 기(記), 설(說) 등 각종 문서와 다양한 형태의 글로 이루어졌다.

<표 7> 『보감』에 수록된 주요 글 목록

번호	제목	번호	제목
1	朴孝娘請褒通文	25	論江都守臣罪疏
2	山僧德妙戲色改過俵音	26	松菊竹爭長說
6	任子洞乞掘崔柱華偷葬上言	29	訟女再離原情
12	請治鷄犬攘殺者所志	31	能捉免役文
13	請脫攘鷄犬罪所志	32	木手除役文
14	鄭司業求婚於金司隸書	33	一身兩名辨白文

<표 7>에 제시된 주요 글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박효랑청포통문>은 박효랑이 효녀로 정려를 받을 있도록 건의하자며 전국 유림들에게 보낸 글이다. 박효랑은 아버지와 언니가 산송 과정에서 잇달아 억울하게 사망하자 남장(男裝)하고 상경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당시 유림들은 이에 호응해서 두 차례나 복합상소를 하는 등 커다란 반향이 일었는데³²⁾ 이 통문은 그 후 그녀에게 정려를 내려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작성된 것이다. (2) <산송덕묘회색개과고음>은 탈선했던 산송이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면서 작성한 일종의 각서이다. (6) <임자동결굴최주화 투장상언>은 산송 상언으로 이미 『요람』 4에서 살펴본 <임자강산송상언>과 동일한 내용이다.

31) 개인소장으로 1책 45장이며 크기는 미상이다. 표지에는 『보감』으로 되어 있으나 권 수에는 『견문잡록(見聞雜錄)』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표지의 제목을 따랐다. 표지에 '신유십일월일 가의(辛酉十一月日 加衣)'라 되어 있다.

32) 류준경, 「박효랑 사건의 서사화 양상과 그 의미」, 『고전문학연구』 25, 2004; 전경목, 「'박효랑 사건'의 전말과 소송상의 문제점」, 『법사학연구』 31, 2005.

(12) <청치계전양살자소지>는 닭과 개를 주인 몰래 훔쳐 먹은 학동을 처벌해 달라는 탄원서이며 (13) <청탈양계전죄소지>는 학동이 이에 대해 변명하며 관에 올린 글이다. (14) <정사업구혼어김사례서>는 정아무개가 장차 머느리를 맞이하기 위해 김아무개에게 보낸 혼서이다. (25) <논강도수신죄소>는 병자호란 당시 강도검찰사로 임명된 김경징(金慶徵)이 임무를 소홀히 해서 성이 함락되자 대간에서 그의 죄를 묻기 위해 올린 상소이다. (26) <송국죽쟁장설>은 최경회(崔慶會)가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나무와 국화 및 대나무가 어른 자리를 놓고 다투는 내용으로 세태를 풍자한 작품이다.³³⁾

(29) <송녀재초원정>은 소박을 당해 친정에 와 있던 딸이 부모를 위해 재혼했으나 첫 남편이 찾아와 행패를 부리자 이를 저지해달라는 탄원서이다. (31) <능착면역문>은 농부에게 어부의 역이 부과되자 이를 바로 잡아달라는 탄원서로 이미 『능착원정소지』에서 살펴본 바 있다. (32) <목수제역문>은 70세가 되어 힘도 없고 눈도 침침한 노인이 자신에게 부과된 목수의 역을 면제해달라고 요청하는 청원서이다. (33) <일신양명번백문>은 한 사람에게 두 가지 역이 부과되자 이를 시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글로 역시 『능착원정소지』에서 이미 살펴본 탄원서의 이본이다.

그런데 이상에서 살펴본 여러 글 중에 특히 탄원서는 대부분 문학적으로 크게 가공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하나의 예를 (2) <산승덕묘희색개과고음>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저는 머리를 깎고 어린 나이에 선문(禪門)에 발을 들여놓아 …… 공경히 한 마음으로 수련하고 불자가 지켜야 할 다섯 가지 계율을 경계하며 불가의

33) 윤순준, 「조선시대 우언 글쓰기의 한 양상 - 화훼류 우언을 중심으로」, 『국문학논집』 19, 2003.

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니다. …… 비록 서시(西施)의 교태라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으며 옥진(玉眞)의 아름다운 얼굴조차 마음에 끌리지 않았습니니다.

그런데 마침 설날을 맞이해 세배의 예(禮)를 행하기 위해 봄바람에 석장(錫杖)을 날려버리고 잠시 속세로 돌아갔는데 문중의 여러 친척이 손을 잡고 다투어 맞이하고 예전의 동료들이 술을 가져와 서로 권해 한 잔 두 잔 마시다 깨닫지 못하는 사이 정신 차리지 못할 정도로 마셨습니다. ……

서산으로 해가 기울 무렵 …… 일어서 작별하고 절로 향하려 했습니다. 석양에 길을 잘못 들었는데 옥 같은 여인이 취한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춘정이 넘쳐 비록 뽕 밭에서 기약한 밀회는 아니지만 월하의 인연을 맺은 것과 유사했습니다. 미친 나비가 꽃을 찾으니 오직 쾌락만 알 뿐이며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벌이 봄을 탐하니 어찌 계을 범하는 것을 알겠습니까?

저의 성품이 모자라나 탕자(蕩子)와는 다릅니다. …… 취중의 희사(戲事)가 깨어난 후에 화가 될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관정(官庭)의 처벌을 벗어날 수 없고 몸은 불가(佛家)에서 버림을 받았으니 무슨 얼굴로 사람을 대할 수 있겠습니까? 몸 둘 곳이 없습니다. …… 지금부터 개과천선해서 …… 절대로 법을 범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며 영원히 신칙하며 살겠습니다. 이와 같은 다짐을 제출한 후 다시 음탕함을 탐하고 전과 같이 바꾸지 않는다면 살아서는 나라의 법에 따라 마땅히 처벌을 받을 것이며 죽은 후에는 지옥에 간힘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³⁴⁾

34) 矣僧削髮早歲 托迹禪門 …… 敬修一心 …… 惕念五戒 不違法律 …… 雖西施之嬌容 不足以入眼 縱玉眞之艷色 不足以勤念 適月正之日 欲行歲拜之禮 飛錫杖於春風 暫來往於紅塵 門中諸族 携手爭迎 昔時朋儕 把酒相屬 一盃二盃 不覺醕酌 …… 及其西山日暮 …… 起而將辭 向于古寺 斜陽路左 有女如玉 醉顏暫擡 春情已融 雖非桑中之期 擬結月下之緣 狂蝶趁花 只知快意 遊蜂貪春 豈知犯律 …… 山僧性掘 有異蕩子 …… 那知醉裡之戲事 乃作醒後之禍崇 罪難追於官庭 身見棄於佛家 何顏對人 措躬無地 …… 自今以後 改過遷善 …… 絕無冒法之事 永爲飾(飭)의 誤:인용(자주)行之人 如是納招後 猶復貪淫 如前不易 生前當伏邦憲 死後難免地獄之囚向事(『보감』, 2~4쪽.)

이 문서는 일찍 출가하여 선문에서 수도하던 산승 덕묘가 잠시 탈선하여 술을 마시고 여인들과 운우지락을 즐긴 후 잘못을 깨닫고 다시는 범을 어기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관에 제출한 일종의 각서이다. 조선시대에 탈선한 산승이 처벌을 받고 다시 계율을 어기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사례가 있을지라도 이처럼 탈선 사실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서시와 옥진 등을 거론하며 다짐 문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산승의 탈선을 과장하는 등 문학적으로 가공한 것임을 알 수 있다.

(3) 『隨聞錄』

『수문록』에는 소장, 원정, 장계, 상소, 제사(題辭), 사장(辭狀), 보장(報狀), 단자, 사륙문(四六文), 하체[下帖], 축문, 격서(檄書), 통문, 권연문(勸緣文), 비문, 상서, 상언, 표(表), 초사(招辭), 의송 등 89편의 각종 문서와 다양한 글이 수록되어 있다.³⁵⁾ 이 책에 실린 주요한 글의 목록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8>과 같다.

〈표 8〉 『수문록』에 실린 주요 글 목록

번호	제목	번호	제목
3	昌平高宗鎮妻辛氏原情	49	坡平尹氏族譜事通文
16	爲親孝行事請財單子	67	華陽洞萬東廟碑文
17	舌耕見逐事呈狀	73	良女必英招辭
21	客中請筆墨狀	74	棄婦原情
37	寡女雪冤狀	85	鬚婦之妻所志
44	山神祭祝文	86	失女於監司子弟冤情

35) 개인소장으로 크기는 미상이다. 책의 뒷장에 ‘장사중 기축이월십오일 여유당등서(狀辭終 己丑二月十五日 如有堂謄書)’라고 되어 있어서 필사 시기는 기축년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연대와 필사자는 파악할 수 없다.

위 표에 제시된 주요 글의 내용을 살펴보면 (3) <창평고종진처신씨원정>은 전라도 창평현(昌平縣)에 살던 고종진의 아내 신씨(辛氏)가 삼종형 고종중(高鍾重) 대신 죄를 뒤집어 쓴 남편의 억울한 사정을 관에 알리기 위해 작성한 탄원서이다. (16) <위친효행사청재단자>는 부친의 효자 정려를 위해 여러 차례 상경하느라 많은 비용이 들었음을 향당의 사우에게 알리고 후원해 주기를 호소하는 글이다. (17) <설경건축사정장>은 학채를 받지 못한 훈장이 수령에게 이를 받을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올린 탄원서로 이미 『능착원정소지』에서 소개한 <낭주사인원정소지>의 이본이다.

(21) <객중청필목장>은 호서에서 영남으로 가던 길에 어느 한 고을에 들른 선비가 마침 백일장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령에게 필목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작성한 청원서이다. (37) <과녀설원장>은 경상도 성주 출신의 양녀 애금이 작성한 탄원서로 이옥의 『봉성문여』에서 소개한 <애금공장>의 이본이다. (44) <산신제축문>은 지역민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산신령에게 제사를 지낼 때 축원하는 글이다.

(49) <파평윤씨족보사통문>은 파평윤씨 보소(譜所)에서 족보를 간행하기 위해 각지에 흩어져 사는 종족 구성원에게 수단(修單)과 수전(收錢)이 늦지 않도록 하라고 촉구하며 보낸 글이다. 거짓 통문을 보내어 돈을 거두는 것[僞通收錢]을 막기 위해 각 고을의 공형(公兄)에게 통문을 보내는 것이 주목된다. (67) <화양동만동묘비문>은 도암 이재(陶菴 李緯)가 청주 화양동에 만동묘를 세우게 된 내력 등을 밝힌 글로 『도암선생집(陶菴先生集)』 권 30에도 ‘만동묘비’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실려 있다.

(73) <양녀필영초사>는 필영이 제출한 진술서로 이옥의 『봉성문여』에 나오는 <필영공사>의 이본이다. (74) <기부원정>은 소박 당한 후 재혼

해서 아이를 낳고 잘 살게 되자 갑자기 찾아와 괴롭히는 전 남편을 처벌해 달라는 탄원서로 『능착원정소지』에 나오는 <기부원정소지>의 이본이다. (85) <수부지처소지>는 어려서부터 외가에서 자라다 음양의 이치도 모르는 남편과 결혼한 후 세월만 허송하고 있으니 재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탄원서로 앞에서 소개한 <박명첩원정소지>의 이본이다. 성(性)에 관심 없는 남편을 ‘수염 난 아낙[鬚婦]’이라고 조롱한 것이 눈에 띈다. (86) <실녀어감사자제원정>은 감사의 자제에게 아내와 딸을 빼앗긴 남자가 제출한 탄원서로 여러 용례집에 소개된 이본 중의 하나이다.

『수문록』에 소개되어 있는 주요한 글, 그 중에서도 특히 다른 용례집에도 실려 있는 이본들은 앞에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한 바와 같이 문학적으로 크게 가공된 것들이다. 그 한 사례로 (74) <기부원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가 복이 없고 팔자가 사나워 꽃다운 나이 17세에 탕자(蕩子)를 데려와 살았는데 남편의 이름은 방태선(房太先)이었습니다. 함께 산 지 9년이 되었지만 아들 하나를 낳지 못했습니다. 태선은 자신이 남편 구실 못하는 것을 헤아리지 못하고 전적으로 아낙이 홀로 아이 낳지 못함만을 탓하며 이를 흠 잡아 마음속으로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바람이 몹시 부는데 어디서 온 지 알 수 없는 한 여인이 비를 피해 들어와, 가엾게 여겨 맞이해서 제 옷을 벗어 입히고 먹을 것을 찾아 먹였습니다. 문을 활짝 열어 도적을 받아들였다는 걱정은 추호도 하지 못한 채 같은 방에서 함께 자며 태연히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새 여인을 좋아해 음흉한 마음을 크게 내어 몰래 엿고 도망쳐 때를 틈타 간음했습니다. ……

다음날 날이 개어 길이 마르자 사람들은 통행했는데 이 여인은 망설이며 얼른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밤을 애타게 기다려 몰래 엿보았더니 남편과

곧바로 친밀해져 부부처럼 금슬이 좋았습니다. …… 남편은 새 여인과 점점 친밀해지고 저를 더욱 멀리하더니 마침내 까치집에 비둘기가 살 듯 그 여인이 제 지위를 빼앗아 손님이 주인 행세를 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한두 차례 때리며 구박이 심해지더니 마침내 문밖으로 쫓아냈습니다.……

혹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에게 조금이라도 정성을 다하면 이로 인해 남편과 화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머리 장식을 다 팔아 옷감을 마련해서 직접 옷을 지어 시아버지에게 입히고 치마를 만들어 시어머니에게 바쳤습니다. 그 결과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사랑은 더욱 돈독해졌으나 남편의 미워함은 더욱 심해져 그 부모에게 협박하며 말하기를 “몸에 걸친 새 옷은 내가 증오하는 사람이 만든 것이다.”라며 옷을 벗겨 불 속에 던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야외로 내쫓아 고목의 뿌리에 머리를 묶은 후 낮으로 온 몸을 상처를 냈습니다.

이제 부부의 은정을 다시 바랄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어쩔 수 없이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드리고 통곡하며 돌아오니 친정은 쇠락해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한 떨기의 시든 꽃을 별원(別園)에 옮겨 심었더니 푸른 잎이 우거지고 꽃망울이 맺었습니다. 전에 방가와 아이를 낳지 못한 것은 방가의 잘못이요 저의 허물이 아닙니다. 다른 가문 사람과의 재혼이 비록 여자 행실에 부끄러운 점은 있지만 그가 저와 인연을 끊었으니 제가 어떻게 그를 따를 수 있겠습니까?

바야흐로 새 즐거움을 위해 옛 정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방가가 도리어 후회해서 누운 소 타듯 저에게 재결함을 요구합니다. 처음에 왜 버렸다가 나중에 어찌 찾으려 합니까? …… 그도 또한 사람인데 사람의 아들이 무슨 면목으로 그러는 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이미 다른 가문으로 시집을 가서 새로운 인연을 맺은 후인데 자칭 전 남편이라며 갑자기 찾아와 행패를 부려 새 남편이 장차 저를 내어 쫓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는 동쪽 제나라에게 패하고서 남쪽 초나라에 와서 분풀이 하는 것이니 무슨 정경입니까? …… 차라리 이 집에서 자결할지언정 다른 가문에 거듭 시집가지 않겠습니다. 다른 집으로 들어간 칼은 되찾기 어렵습니다. 옆드려 바라건대 전후 사

정을 잘 참고하셔서 공평한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³⁶⁾

위 탄원서에서 사용된 문구 중 ‘문을 열고 도적을 맞이한다[開門納賊]’, ‘누운 소타기[乘臥牛]’, ‘사향노루가 제 배꼽을 물어뜯으며 후회한다[麝悔]’, ‘남의 집에서 주인행세 한다[鵲巢鳩居]’, ‘손님으로 온 사람이 도리어 주인 행세를 한다[回賓作主]’ 등은 모두 고사성어를 인용한 것들이며 머리 장식을 팔아 시부모에게 옷을 해주는 것 등은 갈등을 고조시키기 위해 문학적으로 삽입한 것들이라고 판단된다. 이처럼 『수문록』에 수록된 상당수의 글들은 고사성어를 이용해서 표현을 가다듬거나 의도된 이야기를 삽입해서 갈등을 고조시키는 등 문학적으로 상당히 가공을 거친 것들이다.

(4) 『전주영리심처상』

『전주영리심처장』 역시 위에서 소개한 『수문록』처럼 소지를 비롯해서

36) 女矣身薄命 芳年十七 蕩子來贅 卽房太先云者也 同居九年 未產一子 太先者 不量天道之不能行氣 專責地理之無以獨成 以此執欠 不滿於心是如乎 某月日 風雨大作 不知自何來一女人 避雨而入 憐而接之 鮮衣衣之 推食食之 頓味開門納賊之患 同寢一房 泰然無疑 丈夫好新 大發黑心 竊負而逃 乘時作奸 …… 翌日天晴 路乾人行 厥女盤桓有不肯去之狀 苦待後夜 佯窺伺視 以膠投漆 鼓琴和瑟 …… 新情漸密 舊緣益踈 鵲巢鳩居 回賓作主 …… 一打之二打之 益甚駭迫出門是乎矣 …… 一分意思 盡誠舅姑 因此納交於郎子之地 盡賣首飾 自備布帛 縫衣而着舅 製裳而獻姑 以此舅姑 愛之益厚 而渠則惡之益甚 喝其父母曰 身上新衣是吾可憎人所製之物是如 脫其衣裳 投之火中 逐出女身於野外 結髮於古木之根 舉鎌亂攻 編(遍)의 誤:인용자주)身鎌痕 夫婦恩情 更無可望是乎矣 …… 拜辭舅姑 痛哭歸來 則本家零落 托身無地 一枝殘花 移植別園 綠葉成陰 荳蔻含胎 曩在方家(房哥의 誤:인용자주)之未媿 方(房의 誤:인용자주)之過也 非妾之過也 再登人門 雖媿女行 而彼其絕我 我何從彼 方做新歡 已斷舊情 所爲房哥者 反生懣悔 欲乘臥牛 初何踈棄 後何推尋 …… 彼亦人 人子有何面目 旣登他門 已結新緣之後 自稱前夫 唐突來尋 使我新夫 將有逐逐之氣 則東敗於齊 南辱於楚 是何情景耶 …… 寧自決於此家 誓不再登他門 …… 剗入他匣 抽之亦難 伏乞前後叅的 折中指一爲白只爲(『수문록』, 154~155쪽.)

통문, 묘갈명, 제문, 비문 등 다양한 문서와 각종 글이 수록되어 있는데³⁷⁾ 그 중 주요한 글의 목록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9>와 같다.

<표 9> 『전주영리심처장』에 실린 주요 글 목록

번호	제목	번호	제목
1	全州營吏尋妻狀	44	儒人全州李氏墓碣銘
3	昌平高宗鎮妻辛氏原情	50	遍埋四境無主藁葬擇吉祭文
9	南原人犯屠事狀	51	許眉叟退潮碑文
10	答本邑雇馬添租通文	58	折臂者免役狀
32	任實雇入兒原情	59	寺僧顔役狀

주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1) <전주영리심처장>은 감사의 자제에게 아내와 딸을 빼앗긴 영리(營吏)가 제출한 탄원서로 『수문록』에 실린 <실녀어감사자제원정>의 이본이다. (3) <창평고종진처신씨원정>은 창평에 살던 고종진의 아내 신씨가 올린 소지로 이미 『수문록』에서 소개한 바 있다. (9) <남원인범도사장>은 관의 허락 없이 소를 잡아먹었다는 혐의를 받던 양반이 이를 변명하기 위해 올린 탄원서이다. 『수문록』에는 <남원인범도발명장>이라는 이름으로 이본이 실려 있다. (10) <답본읍고마침조통문>은 고마청에 내야하는 세금의 증세 문제로 전라도 진안현의 유림들이 모여 의견을 개진한 후 그 결과를 답변하는 통문이다. 『수문록』에 <답고마침조통문>이라는 이름으로 이본이 수록되어 있다.

(32) <임실고입아원정>은 머슴살이해서 돈을 모은 고아에게 상전이

37) 개인소장으로 크기는 미상이다. 앞 표지에 책명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뒷 표지에 ‘남당선생가훈(南塘先生家訓)’이라 쓰여 있다. 그러나 앞에서 그러한 것처럼 표제가 없을 때에는 제일 앞에 나오는 글로 표제를 삼았기 때문에 책명을 편의상 ‘전주영리심처장(全州營吏尋妻狀)’이라 명명했다.

이자를 크게 늘려 장가가게 해주겠다며 돈을 빌려간 후 갚지 않자 이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제출한 탄원서이다. 역시 『수문록』에 <임실고 입인원정>이라는 이름으로 실려 있다. (44) <유인전주이씨묘갈명>은 정록(鄭錄)의 아내 전주이씨의 묘갈명으로 정원용(鄭元容, 1783~1873)이 짓고 정건조(鄭健朝, 1823~1882)가 썼다. 정원용의 문집인 『경산집(經山集)』에도 실려 있다. (49) <남당한선생부훈>은 한원진(韓元震, 1682~1751)이 자신의 며느리에게 내린 글로 『남당선생문집(南塘先生文集)』에도 실려 있다. 그러나 이곳에 필사된 것은 ‘통설장제일(統說章第一)’의 극히 일부인데 필사 과정에서 잘못되었는지 내용이 연결되지 않는다.

(50) <편매사경무주고장택길제문>은 연고자가 없어서 고장(藁葬)한 주검들을 길한 날을 택해 장사 지내주며 영전에 올린 제문이다. (51) <허미수퇴조비문>은 미수 허목(眉叟 許穆)이 지은 것이다. 그가 삼척부사로 재임할 때 해일이 일어 온 고을을 덮치자 동해를 예찬하는 노래를 지어 물난리를 진정시켰다고 하는데 이 글은 바로 그때 지은 것이다. (58) <절비자면역장>은 어려서 나무에 오르다 떨어져서 팔이 부러진 사내종이 자신에게 부과된 군역을 면제해달라며 제출한 탄원서이다. (59) <사승이역장>은 속세를 떠나 사승(寺僧)이 되었으니 부과된 군역을 빼어달라고 간청하며 작성한 청원서이다.

3. 필사본 용례집의 특징

이제 필사본 용례집들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자. 첫째, 수요자의 취향과 지적 수준 및 신분 등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용례집이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능착원정소지』는 백성을 교화하기

위해 편찬된 『경민편』과 흥미 위주의 탄원서가 주로 수록되어 있는 데 비해 『요람』 2는 동학농민전쟁 때 유생들이 올린 탄원서와 청탁할 때 작성하는 간찰을 위주로 편찬되었다. 『요람』 1은 다양한 문서의 서식을 소개하는 데에 주안점을 둔데 반해 『요람』 3은 속명을 찾아볼 수 있도록 사전 형태로 구성되었으며 『요람』 4는 탄원서 형식의 의인소설을 위주로 편찬되었다. 탄원서 작성 요령이나 형식 등이 편찬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제공되지 않고 수요자의 필요나 취향에 따라 어떻게 선정·발췌·가공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사례이다.

둘째, 필사본 용례집 가운데에는 학동들이 직접 편찬하거나 베껴 썼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들이 많다. 예컨대 『능착원정소지』는 글씨의 모양이 줄렬하고 숙련되지 않았으며 또 오자나 탈자가 많은 점으로 미루어 아마 학동이 필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거기다가 ‘은[ㄱ]’, ‘하고[ㅂ口]’, ‘하니[ㅂㅅ]’와 같은 구두가 달려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추측해보면 학동들이 해독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훈장이 미리 구두를 붙여주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 (51) <산송장>을 소개하면서 “이는 함양(咸陽) 송호(松湖)에 살고 있는 이동(李童)이 17세에 지은 것이다. 좌도(左道)의 군위인(軍威人)과의 산송에서 패소하자 이 소장을 작성했다.”고 밝히고 있다.³⁸⁾ 이는 산송장 작성자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서당에서 배운 『추구(推句)』 등의 구절을 응용해서 산도(山圖)를 작성한 아전들의 농간을 은근히 빗대어 잘 표현했기 때문이었다.³⁹⁾ 이처럼 잘 작성된 소장을 소개하고 아울러

38) 竊伏以 鳥可畫也 而聲不得畫焉 花可繪也 而香不得繪焉 則聽於屏上者 豈聞鳥之眞聲乎 玩於紙末者 豈知花之眞香乎 山之圖形 亦猶是焉 曰岡曰陵 惑得其勢然翬然 遠近緊歇之勢 難以筆形 且夫山形者 天作也 圖形者人作 人作雖妙 萬不及天作 況於天無私而人有狹也 云云 此咸陽松湖李童年十七歲作也 左道軍威人以山訟落課(科의 誤:인용자주)而得此狀(『능착원정소지』, 64쪽.)

39) 용례집을 통해서 배우는 소송의 전략 등에 대해서는 별고에서 상세히 다룰 예정이다.

소장 작성자의 거주지와 나이 및 성을 밝힘으로서 같은 또래의 학동들을 분발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더군다나 이 소지 바로 뒤에 학습을 위해 기름을 지급해달라는 (53) <청유장>이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러한 판단이 단지 추측에 불과하지 않고 사실에 부합할 것이라 생각이 든다.

한편 『속명유취』 중간에는 ‘교인책(敎人冊)’과 ‘십오세서(十五歲書)’라는 기록이 있는데⁴⁰⁾ 이를 통해서도 이러한 용례집이 서당에서 교재로 사용되었으며 또 15세의 학동이 베껴 썼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상사동기』에는 구두가 역시 달려 있을 뿐 아니라 책의 첫머리에 ‘대장부행사당여시아(大丈夫行事當如是也)’라는 제목 아래 “대장부의 심경(心鏡)은 청천백일(青天白日)처럼 밝고 똑똑해야 하며 대장부의 기상(氣像)은 태산교악(泰山喬嶽)처럼 높고 커야 한다.”는 등 대장부가 갖추어야 할 덕목이나 자세 등이 기록되어 있는데⁴¹⁾ 이를 보면 이러한 용례집은 주로 서당 학동들이 이용했던 것이라 판단된다. 대장부로서 호연지기를 한창 기를 대상이 그들이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보감』과 『수문록』 및 『전주영리십처장』 등은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편찬된 용례집으로 추정된다. 그 중 족보 간행을 위한 통문이나 체제공의 변무소 및 화양동 만동묘비문이나 미수의 동해척주비문 등은 양반의 관심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글이 포함된 용례집은 양반이 편찬한 것으로 추정하기 쉽다. 그러나 이러한 글들을 양반만 읽지 않고 한자 해독이 가능한 중인이나 평민 출신도 많이 읽었다. 조선후기에는 이러

40) 『속명유취』 66쪽. 앞에서 사진으로 해당 면을 소개했다.

41) 大丈夫行事當如是也/ 青天白日 廓乎昭明 丈夫之心鏡/ 泰山喬嶽 峯乎高大 丈夫之氣像/ 花暖春城 萬和方暢 丈夫之容色/ 雪滿窮巷 孤松特立 丈夫之志節/ 南溟北海 浩無涯岸 丈夫之局量/ 光風霽月 淨無塵埃 丈夫之襟懷/ 鴻冥水國 飛必含蘆 丈夫之戒愼/ 鳳翔千仞 飢不啄粟 丈夫之廉隅(『상사동기』 1쪽.)

한 글을 읽고 대화하는 것이 일종의 교양이었기 때문에 양반뿐만 아니라 중인과 평민들도 애독했다. 더군다나 죽보 간행을 위한 통문은 수단과 죽보 대금 징수를 공형(公兄)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향리들이 반드시 이러한 내용을 알아야만 했다.⁴²⁾

셋째, 용례집은 대부분 한 차례의 편찬으로 완성되었을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두어 차례 추가로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다. 용례집을 살펴보면 여러 필체로 이루어져 있고 또 1차 편찬 후 가필한 흔적이 역력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능착원정소지』의 경우, 처음에는 매우 서툰 필체에 대자(大字)로 쓰여 있으나 (7) <경민편> 이후에는 좀 더 숙달된 글씨에 소자(小字)로 작성되었다. 『요람』 3의 경우에는 전반부의 글씨가 서툰데 비해 후반부는 세련되어, 필사의 시기나 필사자가 달랐음을 알 수 있다. 『보감』의 경우에도 두어 필체로 이루어진 사실을 통해 시간을 두고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요람』 1과 같이 수요자의 의향이나 요구에 따라 서식 위주의 편찬이 이루어지거나 『요람』 3과 같은 속명사전이 첨가되는 사례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독자의 읽는 재미를 유발하기 위해 고사성어를 이용해 세련된 표현으로 수정하거나 혹은 갈등을 고조시키기 위해 허구의 인물이나 사실이 첨입되는 등 문학적으로 가공된 글이 많다. 학동이 가져온 소지의 내용과 표현 등을 이육이 수정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이는 실재했던 사실을 기록한 탄원서나 청원서가 어떤 가공 과정을 거쳐 소설이나 다른 읽을거리로 변모하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판단된다. 조선후기에 서당을 중심으로 소지 읽기 열풍이 불자 아예 소지 형식을 빈 창작물까지 등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42) 修單事例 一依後錄 無或疎漏 近來人心不古 僞通收錢 間多其弊 故爲其防僞 茲以印出付傳于各邑公兄處 使之傳納 盖欲重其事而進其信也(『수문록』, 101~102쪽.)

다섯째, 이러한 용례집에는 조선후기 사회상을 알 수 있는 다양한 탄원서와 청원서 등이 매우 많이 소개되어 있다. 따라서 용례집은 조선후기 사회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선후기 사회상을 알 수 있는 자료로 민장치부책 등이 있으나 이러한 자료들은 그 내용이 매우 간단하게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 이에 비해 용례집에 소개된 자료는 매우 구체적이어서 사회상을 파악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여섯째, 탄원서나 청원서 중에는 대체적으로 내용은 같으나 줄거리나 인물 등이 첨삭된 이본이 상당히 전해지고 있다. 이는 이러한 탄원서나 청원서가 신분이나 계층을 불문하고 광범위하게 읽혀지고 있었다는 증좌이며 독서층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본에 대한 연구는 조선후기 새로운 모습을 살펴보는 데 매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필자가 위의 용례집에서 찾아낸 이본들에 대해 소개하면 다음의 <표 10>과 같다.

일곱째, 학동들은 용례집에 소개된 탄원서나 청원서 이본을 살펴보면, 기존의 탄원이나 청원 사실에 어떠한 새로운 내용이 보태져서 더욱 재미 있는 스토리가 구성되고 색다른 갈등 구조가 첨가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가를 살펴볼 수 있었다. 또 원고와 피고가 각기 관아에 제출했던 소송장을 통해 서로 다른 주장을 동시에 비교해서 읽음으로서 소장 작성법을 익힐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주장을 무력화 시키고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피력해서 소기의 목적을 관철시킬 수 있는가를 학습할 수 있었다. 요컨대 탄원서나 청원서를 명확하게 작성하는 방법과 소송에서 이기는 전략을 익힐 수 있었다. 서당에서 학동들이 탄원서를 읽고 배우는 것에 열망한 이유는 한편으로는 재미를 추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탄원서 작성법을 익히고 승소 전략을 습득하려는 그들의 요구에 부응했

4.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용례집들은 수요자의 다양한 지적 수준이나 서로 다른 취향과 신분에 맞추어 편찬되었기 때문에 내용에 커다란 차이가 있었다. 실용적인 글들의 여러 서식을 보고 싶은 수요자를 위해서는 『수문록』과 같이 탄원서를 비롯하여 축문, 통문, 비문 등의 예식을 예시했다. 또 이러한 다양한 실용문 서식과 함께 각종 청탁 간찰 사례를 보고 싶어 하는 독자를 위해서는 『요람』 2과 같은 방식으로 책을 엮었다. 이와 함께 소설을 읽고 싶어 하는 독자를 위해서는 『상사동기』와 같은 방식으로 편찬했다. 여기에 덧붙여 속명을 알고 싶어 하는 독자를 위해서는 『요람』 3과 같은 방식으로 책을 꾸몄다.

한편으로는 이처럼 독자의 다양한 필요와 요구 및 수준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편찬했기 때문에 간행에 어려움이 뒤따랐다. 간행을 해보야 소량 판매에 그칠 것이기 때문에 아예 이를 시도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용례집들을 다양하게 편찬했지만 간행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말았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책의 수요자 즉 독자가 대부분 중인이나 평민 출신의 서당 학동이나 그의 부형이었다는 점이다.

서당 학동들이 많이 읽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필사본 용례집에 대한 연구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에 대해 언급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필사본 용례집에 대한 연구 조사가 시급하게 이루어져 많은 자료들이 새롭게 발굴되어야 할 것이다. 그간 고서에 대한 연구 조사가 주로 양반의 종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들이 발굴 소개되지 않았다. 중인과 평민가에 대한 조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도서관이나 박물관의 수장고에 방치되어 있는 필사본 서책에 대한 연구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조선시대 서식집이라고 할 수 있는 『유서필지』나 간찰 교본이라 할 수 있는 『간독정요』 등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서식집과 용례집은 모두 필요에 따라 편찬되었지만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서로 영향을 주며 편찬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필사본 용례집이 지역이나 시대에 따라 어떻게 다르며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지역과 시대의 변천에 따라 특정한 내용이 추가되거나 삭제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지역이나 시대적 특징이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넷째, 이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여러 필사본 용례집에는 같은 내용의 탄원서나 청원서가 서로 다른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내용이 크게 첨삭되거나 혹은 표현이 섬세하게 다른 부분이 많다. 편찬자들이 필요에 따라 제목을 고치거나 내용을 첨삭했기 때문인데 어떤 것이 얼마나 다른지에 대한 연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지역과 시대를 넘어 널리 읽혔던 탄원서나 청원서들은 편집자나 독자에 의해 추후 단편 서사물이나 다른 읽을거리로 변모해 갔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도 아울러 이루어져야만 한다.

참고문헌

- 편찬자 미상, 『수문록』, 개인 소장
- 편찬자 미상, 『상사동기』, 서울대규장각,
- 편찬자 미상, 『요람』 1, 전라북도 남원군 송동면 김해김씨 종가 소장.
- 편찬자 미상, 『요람』 2, 개인 소장.
- 편찬자 미상, 『요람』 3, 개인 소장.
- 편찬자 미상, 『요람』 4,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편찬자 미상, 『능착원정소지』, 개인 소장.
- 편찬자 미상, 『보감』, 개인 소장.
- 편찬자 미상, 『전주영리십처장』, 개인 소장.
- 김구, 『김구자서전 백범일지』, 나남출판. 2002, 1~294쪽.
- 이대형 외 역주, 『손와만록』,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1~260쪽.
- 이대형 외 역주, 『요람』, 보고사, 2012, 1~309쪽.
- 이옥 지음,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옮기고 엮음, 『완역 이옥전집』, 휴머니스트, 2009.
-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1~443쪽.
- 김영진, 『『염승전』 연구』, 『한국한문학연구』 23, 1999, 353~387쪽.
- 김영진, 『『손와만록자서』를 통해 본 향리 출신 문인 김경천의 생애』, 『대동한문학』 41, 2014, 81~110쪽.
- 류준경, 『박효량 사건의 서사화 양상과 그 의미』, 『고전문학연구』 25, 2004, 255~288쪽.
- 윤승준, 『조선시대 우언 글쓰기의 한 양상 - 화훼류 우언을 중심으로』, 『국문학논집』 19, 2003, 307~335쪽.
- 윤주필, 『한국에서의 <공자동자 문답> 전승의 분포와 그 특징』, 『열상고전연구』 23, 2006, 239~276쪽.
- 윤주필, 『<공자동자 문답>의 동아시아적 전개 비교론』, 『고소설연구』 38, 2014, 357~396쪽.
- 윤주필, 『동아시아 <공자동자 문답> 전승의 연원 고찰』, 『대동문화연구』 89, 2015, 473~503쪽.

전경목, 「‘박효량 사건’의 전말과 소송상의 문제점」, 『법사학연구』 31, 2005, 137~169쪽.

전경목, 「『속명유취』 해제」, 『문헌과해석』 34, 2006.

전경목, 「조선후기의 교생」, 『고문서연구』 33, 2008, 281~318쪽.

전경목, 「조선후기에 서당 학동들이 읽은 탄원서」, 『고문서연구』 48, 2016, 257~286쪽.

전경목 외, 『승충명록으로 보는 조선후기 향촌지식인의 생활사』,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0, 1~262쪽.

정호훈, 「16·17세기 경민편 간행의 추이와 그 성격」, 『한국사상사학』 26, 2006, 119~158쪽.



ABSTRACT

Contents and Features of Manuscript of 'Collections of Practical Texts' that Pupils at Seodang Read

Chon, Kyoung-mok

In the late Joseon period, pupils from non-yangban family also went to either seodang or saejae to learn classical Chinese and study basic Confucian scriptures. Because it was impossible for them to become national administrators by passing the national civil service examination, non-yangban pupils studied in preparation for working as low-ranking officials at local government offices or older students in local educational institution without problems in the future. Thus, they devoted themselves to learn practical texts such as petitions rather than the scriptures of Confucianism and Neo-Confucianism. It was manuscript of 'Collections of Practical Texts' that those pupils read as learning materials. Published in various forms to meet readers' social status and/or their need, the collections consisted of all sorts of documents, forms of letters, and novels in general according to some existing Collections. Pupils learned and practiced forms of various documents, letters, and novels through their teacher at seodang. Petitions included in the Collections are useful sources to research the society of the time, for they reflect diverse aspects of life and social conflicts of the time. At the same time, the petitions are considered to be significant materials through which what non-yangban pupils studied would be examined in detail.

Key Words eodang, pupil, low-ranking local official, older students in local educational institution, Collections of Practical Texts, petition, letters, novel, the late Joseon period, manuscript.

논문투고일 : 2016.6.20
심사완료일 : 2016.8.8
게재확정일 : 2016.8.18

K C I